

일련번호 2025-02

##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하성씨앤아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6-81-11220
주소(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65, B동 603호(갈현동, 과천상상자이타워)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재단법인 휘문장학회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214-82-0993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602호 (서초동)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4조2항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기부금액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장 려금 신청금 액	기타
법정	10	금전	2025.06.11	장학금					1,0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하성씨앤아이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기부금 수령인

재단법인 휘문장학회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기타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일련번호 2025-S500426

# 기부금영수증

## 1. 기부자

성명 (법인명)	(주)하성씨앤아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6-81-11220
주소	(13840)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7길 65 (갈현동,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603호		

## 2. 기부금 단체

법인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105-82-03569
소재지(법인)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단체)			

## 4. 기부내용

유형	일반(지정)기부금		유형	특례(법정)기부금	
코드	코드40		코드	코드10	
년월	내용	금액	년월	내용	금액
2025	01	0	2025	01	0
	02	0		02	0
	03	0		03	0
	04	0		04	0
	05	0		05	0
	06	0		06	0
	07	0		07	0
	08	0		08	0
	09	0		09	0
	10	0		10	0
	11	0		11	0
	12	70,000		12	0
합계		70,000	합계		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신청인

(주)하성씨앤아이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부금 수령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